

의안번호	제 호
의 연 월 결 일 일 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

[재]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

제 출 자	구미시장
제출연월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

출연 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안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150,000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
 -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
 - 출연근거법령 :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

3. 출연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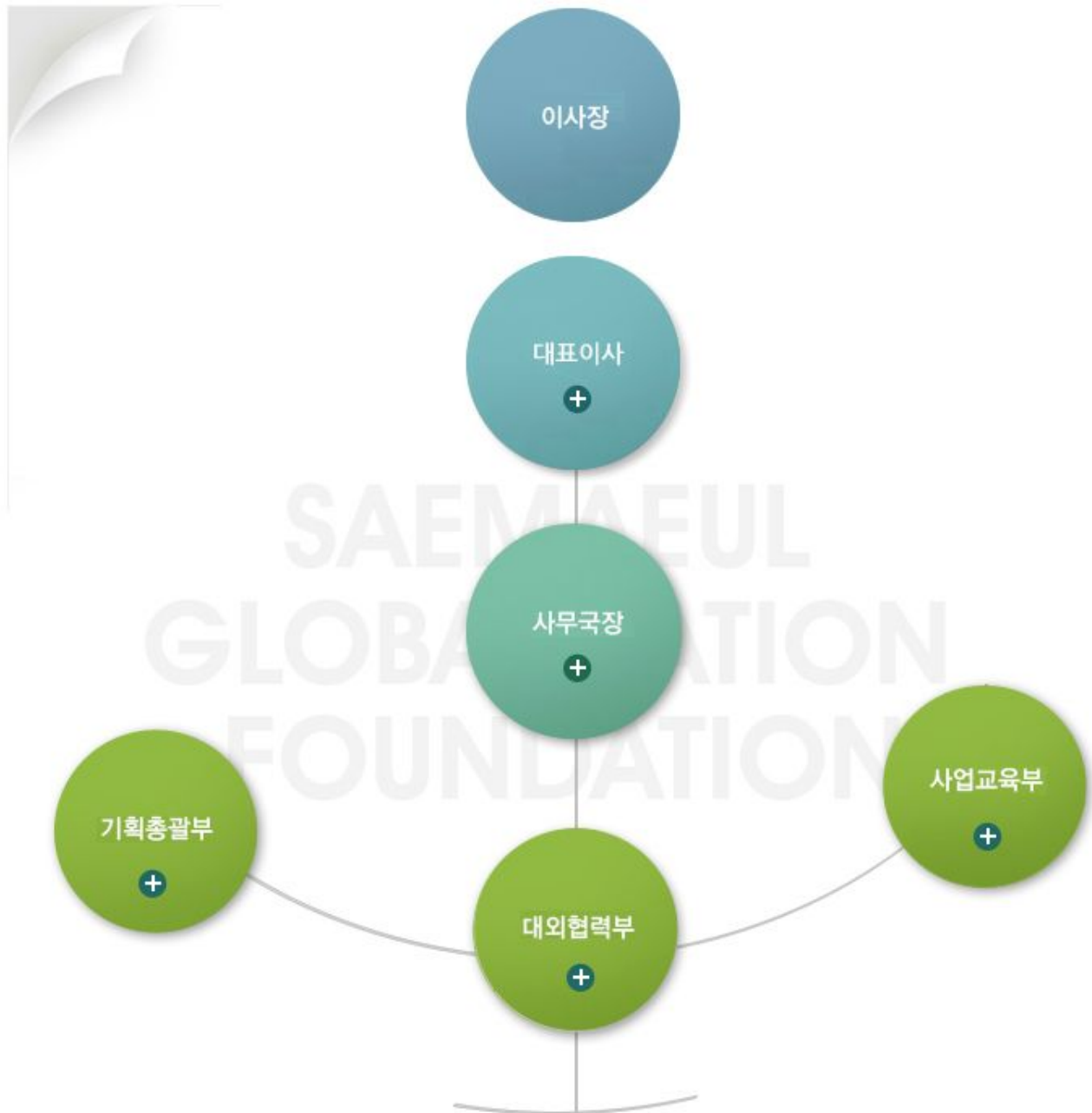
□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

출자·출연 예정액	금150,000천원 ('14년 150,000천원 '15년 150,000천원)
출자·출연 기관	○ 기 관 명 :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○ 대 표 : 이지하 ○ 소 재 지 :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 경제진흥원 8층
사 업 내 용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 ○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○ 경상북도의 자긍심과 국격 제고
사업개요	○ 사업기간 : 2014 ~ 2019 (5개년) - 봉사단 파견(11명) : 14년 7명, 15년 4명 (현원 6명) ○ 대상마을 : 스리랑카 사바라마와주 파할라가마 마을 ○ 사 업 비 : 총 300백만원(연간 150백만원) ○ 사업내용 :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,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, 생활환경개선, 소득증대사업 ○ 주요성과 : 주민숙원사업인 도자기작업장 설치로 소득증대 기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(상기 사업은 1차 년도에 이에 2차 년도에 지속 예정)
근거·법령	○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
검토의견	○ 현지 주민 및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배양하여 스리랑카 피티예가마 마을의 환경개선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○ 인근 마을 및 사라바가무와주 전체로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 ○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됨
소관부서	○ 새마을과장 : 김 영 준 (480-6800)

□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(주소)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 경제진흥원 8층			
②기관소개	○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3년 1월 출범한 비영리공익재단		
③설립근거	○ 조 례 :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		
④연 혁	○ 2012.11. 1. 재단 설립 등기 ○ 2013. 1. 2. 법인업무 개시 ○ 2013. 1.30. 재단 개소	⑤관계기관	○ 경상북도
⑥주요기능	○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 ○ 개도국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○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 연수 ○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○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운영		
⑦기관장 소개	○ 성 명 : 이지하 ○ 학 력 : 육군사관학교 졸업,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졸업(석사) ○ 경 력 : 주.코트디부아르 및 주.아제르바이잔 대사 역임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現)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		
⑧조직 기구도	*별첨 참고		
⑨공시책임자	○ (공시담당자) (소속) 총무인사팀 (직책·성명) 대리 김주완 (전화) 054)479-2019 ○ (확인자) (소속) 총무인사팀 (직책·성명) 팀장 정연욱 (전화) 054)479-2013		

[별첨] 새마을세계화재단 조직기구도



관 계 법 령

○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

소관 실·과		새마을과
입 안 자	담 당 관	김 영 준
	담 당	지 대 근
	담 당 자	이 미 경 (480-6802)